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37
----------	-------

발의연월일 : 2026. 8. 11.

발 의 자 : 주호영 · 강명구 · 김용태
박성민 · 김장겸 · 정성국
박대출 · 권영진 · 성일중
유용원 의원(10인)

제안이유

1962년 「보험업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직접 고용하여 교육 및 감독의 책임까지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에도 활용하거나 또는 소규모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게 하는 등의 판매방식에 주로 의존하면서 성장하였음.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형태의 대형 보험대리점들은 많은 보험설계사들을 자체 소속하에 두고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이면서 기업적인 보험상품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 미치는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적인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로 분리하여

그 자본금, 지배구조와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함으로써 대형 보험대리점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86조의2).
- 다.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변경등록 시 지위의 승계 등을 규정함(안 제86조의3).
- 라.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업무 외 보험계약 유지관리업무, 보험사고의 접수대행, 소액보험금의 지급대행 및 사업비에 관한 협상 등의 추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6).
- 마.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한 자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상품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필수기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86조의4).
- 바.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해 자본금 유지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86조의7).
- 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 등을 보험회사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엄격화함(안 제86조의8).

아.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자격 및 겸영제한은 기존의 대형 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86조의5).

자.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공동으로 보험판매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

차. 보험판매전문협회에 자율규제업무로 소속 보험설계사 등의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제86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8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험판매전문회사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지 못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가 아닌 자
2.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중 그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제86조의3(지위의 승계 등) ①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 후의 자는 그 업무 범위 내에서 변경등록 전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전 종전의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변경등록 후의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변경등록 후의 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86조의4(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 상근임원(감사업무 담당자 및 사외이사를 제외한다)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판매교육책임자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86조의5(보험판매전문회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되지 못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6(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 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의 모집
2. 소속 보험설계사의 교육, 등록업무의 대행, 보험모집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등
3. 보험사고의 접수대행
4.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의 지급대행
6. 보험회사와의 보험모집 위탁계약, 보험모집 수수료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의 사업비에 관한 협상

7.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소관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④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6조의7(보험판매전문회사의 준수사항) 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자본의 총액이 최소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자하여야 한다.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 자본금에 상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영업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8(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营业을 한 경우
4. 제86조의6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4조제1항제2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4조·제87조”를 “제84조·제86조의2·제87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94조 중 “제84조·제87조”를 “제84조·제86조의2·제87조”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제1호 중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10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132조 전단 중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을 “국내사무소·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을 ““국내사무소”·“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전단 중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을 “국내사무소·보험판매회사·보험대리점”으로, “제133조 및 제134조”를 “제133조부터 제135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을 ““국내사무소”·“보험판매회사”·“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178조제1항 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 보험판매회사, 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판매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공동으로 단체(이하 “보험판매회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94조제1항제1호 중 “보험설계사”를 “보험설계사(보험판매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판매회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대리점 및 보험판매회사에 소속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 제86조의2에 따른 보험판매회사의 등록업무
3.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제195조제4항 중 “보험협회는 제87조”를 “보험협회와 보험판매회협회는 각각 제86조의2 및 제87조”로,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등록한 보험판매회사·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제3호 중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을 “보험설계사·보험
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으로 한다.

제209조제7항제7호 본문 중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를 “보험판매전
문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u> <u>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u> <u>로서 제86조의2에 따라 등록</u> <u>된 자를 말한다.</u>
10. ~ 20. (생 략)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 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4.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10. ~ 20. (현행과 같음)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①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보험판매전문회사</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86조의2(보험판매전문회사의</u> <u>등록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u> <u>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u> <u>에 등록하여야 한다.</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자는 보험판매전문회</u> <u>사가 되지 못한다.</u>

<신 설>

1. 「상법」에 따른 회사가 아닌 자

2.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중 그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제86조의3(지위의 승계 등) ①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 후의 자는 그 업무 범위 내에서 변경등록 전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전 종전의 보험대리점

<신 설>

<신 설>

·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변경등록 후의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변경등록 후의 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86조의4(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 등) 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 상근임원(감사업무 담당자 및 사외이사를 제외한다) 및 지점의 대표자는 보험모집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판매교육책임자는 본점과 지점에 각각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준법감시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86조의5(보험판매전문회사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이 되지 못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8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6(보험판매전문회사의

<신 설>

업무) 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의 모집

2. 소속 보험설계사의 교육, 등록업무의 대행, 보험모집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등

3. 보험사고의 접수대행

4.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업무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금의 지급대행

6. 보험회사와의 보험모집 위탁계약, 보험모집 수수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의 사업비에 관한 협상

7.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소관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신 설>

<신 설>

하지 못한다.

④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6조의7(보험판매전문회사의 준수사항) 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자본의 총액이 최소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자하여야 한다.

②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 자본금에 상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영업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8(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보험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1. 제84조 · 제87조 및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
 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

판매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령하
거나 청문을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한 경우
2.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
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
을 한 경우
4. 제86조의6제3항을 위반한 경
우
5. 제134조제1항제2호의 시정명
령을 위반한 경우

제93조(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
· 보험판매전문회사 · 보험대리
점-----

 -----.

1. 제84조 · 제86조의2 · 제87조

된 경우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u>보험대리점</u> 또는 <u>보험중개사</u> 가 소속 <u>보험설계사와 보험모</u> <u>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u> <u>우</u>	7. <u>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u> <u>점</u> -----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4조(등록수수료) <u>제84조·제87</u> <u>조 및 제89조에 따라 보험설계</u> <u>사·보험대리점</u> 또는 <u>보험중개</u> <u>사가 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u> <u>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u> <u>한다.</u>	제94조(등록수수료) <u>제84조·제86</u> <u>조의2·제87조</u> ----- <u>보험설계</u> <u>사·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u> <u>리점</u> ----- ----- ----- ---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 (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 ----- ----- ----- ----- -----.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 는 <u>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u> 또는 <u>보험중개사의 이름·상</u> <u>호나 명칭</u>	1. ----- ---- <u>보험설계사·보험판매전</u> <u>문회사·보험대리점</u>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

자의 의무) <u>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u>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제132조(준용) <u>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u> 및 <u>보험중개사</u>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u>국내사무소</u>”·“<u>보험대리점</u>” 또는 “<u>보험중개사</u>”로 본다. 제136조(준용) ① <u>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u> 및 <u>보험중개사</u>에 관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u>국내사무소</u>”·“<u>보험대리점</u>” 또는 “<u>보험중개사</u>”로 본다. ②·③ (생략)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u>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u>	자의 의무) ----- <u>보험설계사,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u>----- ----- ----- ----- -----. 1. 2. (현행과 같음) 제132조(준용) <u>국내사무소·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u>----- -----. -----“<u>국내사무소</u>”·“<u>보험판매전문회사</u>”·“<u>보험대리점</u>”-----. 제136조(준용) ① <u>국내사무소·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u>----- -----<u>제133조부터 제135조까지</u>-----. -----“<u>국내사무소</u>”·“<u>보험판매전문회사</u>”·“<u>보험대리점</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u>보험설계사,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대리점</u>----- -----
---	--

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신설>

---. 이 경우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대리점은 공동으로 단체(이하 “보험판매전문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4조(업무의 위탁) ① -----

1. -----보험설계사(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제외한다)-----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보험판매전문협회에 위탁한다.

1. 제84조에 따른 보험대리점 및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소속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2. 제86조의2에 따른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업무

3.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② ~ ④ (생략)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① ~ ③ (생략) ④ <u>보험협회는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보험대리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u>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u> 3의2. ~ 9. (생략) ② (생략) 제209조(과태료)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u>등록업무</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보험협회와 보험판매전문협회는 각각 제86조의2 및 제87조-----등록된 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u> -----. 제204조(벌칙)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보험설계사·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u>----- ----- 3의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9조(과태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1. ~ 6. (현행과 같음)
--	---

7. <u>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u>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제96조제1항·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다만,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 21. (생략) ⑧·⑨ (생략)	7. <u>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u>----- ----- ----- ----- ---. ----- ----- ----- ----- ----- ---. 7의2. ~ 21.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	---